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오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엔환경관리계획이사회(UNEP)의 1987년 결정에 따라 구성된 정부전문가그룹이 유엔환경계획의 후원아래 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엔환경계획의 1987년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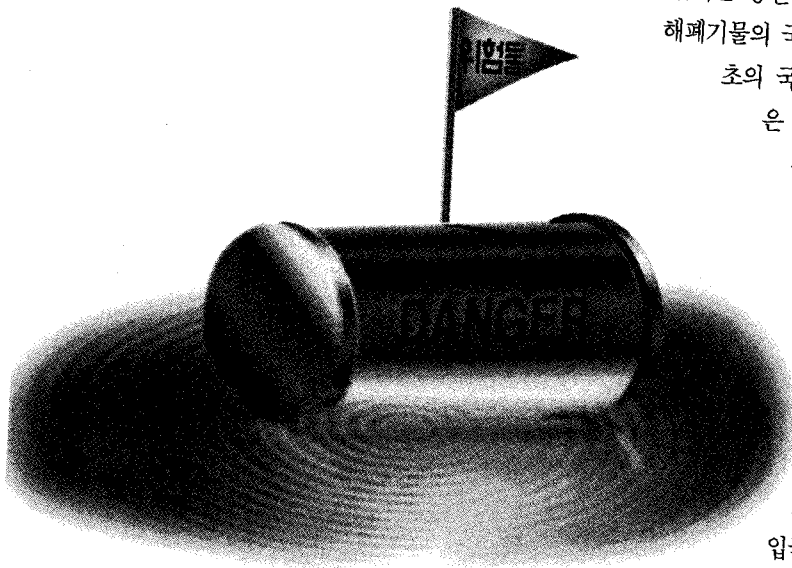
적으로 건전한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카이로 지침, 유해폐기물 이동에 관한 OECD협약초안과 1984년 유럽공동체 이사회지침을 비롯한 종래의 법규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 협약은 바젤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 참석한 116개

국에 의하여 1989. 3 채택되었고 1992. 5 발효되었다.

바젤협약은 종전에는 대부분 법적규제를 피해 왔던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문제를 규율하는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이다. 이 협약의 주요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생산을 가급적 줄이고 생산지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모든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하도록 담보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관심사는 기술적, 입법적으로 취약한 하부구조를 가진 국가의 환경을 선진국에서 생성된 유해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OECD가입국과 비가입국간 처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경우에도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다. 이 조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 진영의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입으로부터 특히 개발도상국을 보호할 필요성과 함께 유해폐기물을 생산하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이를 적절히 관리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그 거래가 최소한 2개국가를 포함하는 경우 즉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된다. 그러

◆ 편집팀



나 연안국이 유해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바젤협약이 아닌 1972년 해양투기에 관한 런던협약과 기타 지역협약이 적용된다.

바젤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아래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수행하거나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해폐기물 수출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활용이나 자원회수산업에 투입될 원자재로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① 바젤협약의 당사국도 아니고 동일한 환경기준을 설정한 협약의 당사국도 아닌 국가에 대한 수출 ② 남극으로의 수출 ③ 예정된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러한 수입을 금하거나 그 회원국에게 국내법으로 이러한 수입을 금하는 지역기구에 가입한 경우 ④ 예정된 최종목적지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믿을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때 등의 경우에는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사국총회 두번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르면 유해폐기물을 OECD가입국에서 비가입국으로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1997. 12. 31 부터는 OECD가입국으로부터 비가입국으로 재활용이나 자원회수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 까지도 금하고 있다. 즉 바젤협약의 테두리내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란 동협약이 금지하지 않는 특정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바젤협약은 사전통보승인에 입각한 모니터링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입국과 경유국이 수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수출국에게 명시적인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통보승인

에 입각한 모니터링절차가 적용되는 사례는 OECD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유해폐기물거래를 금지한 이후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바젤협약의 의정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협약채택 이후 설치된 실무작업반은 의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고 정규적으로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는 별도로 바젤협약은 처리장소와 상관없이 이러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준다. 동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는 ① 유해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하고 ②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은 생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어야 하고(근접성의 원칙) ③ 유해폐기물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확보하고 ④ 수출되는 유해폐기물에도 국내에서 처리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될 것을 보장하고(비차별원칙) ⑤ 가능한 유해폐기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생산을 최소화하는 기술진흥에 협력하고 ⑥ 특히 개발도상국과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등의 의무가 있다.

바젤협약은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C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4. 2. 28 가입하였고 이에 대비 1992년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